

대구예술대학교 교육편제 조정에 관한 규정

(제정 2020.08.11. 법인이사회)

(개정 2023.01.06. 법인이사회)

제 1 장 총칙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학과(전공) 단위의 신설, 통합, 폐지, 정원조정 등 교육편제의 조정에 관한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교육편제란 학칙 제2조의 교육조직에 의한 단과대학·학부·학과(전공)를 말한다.
2. 정원이란 학과(전공)의 입학정원을 말한다.
3. 교육편제 조정은 학과(전공)의 신설·변경·통합·폐지 및 모집중지와 정원조정으로 구분한다.
 - 가. 신설이란 새로운 학과(전공)를 개설하는 것을 말한다.
 - 나. 변경이란 학과(전공)의 명칭을 바꾸는 것을 말한다.
 - 다. 통합이란 2개 이상의 학과(전공)를 하나로 합하는 것을 말한다.
 - 라. 폐지란 설치된 학과(전공)가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.
 - 마. 모집중지란 신입생의 모집을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.
 - 바. 정원조정이란 학과(전공)의 정원을 증원 또는 감원하는 것을 말한다.

제 2 장 교육편제조정위원회

제3조 (설치와 구성) ① 교육편제조정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편제조정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 각 부처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하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.

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, 그 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 결원으로 인한 후임의 임기는 결원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.

제4조 (회의)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2/3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2/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
제5조 (심의사항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학과(전공)의 신설, 변경, 폐지, 통합에 관한 사항
2. 학과(전공)의 정원조정, 모집중지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교육편제조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 3 장 교육편제조정

제6조 (교육편제조정 평가지표) 교육편제조정을 위한 평가지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점수의 합으로 한다.

1. 신입생 충원율
2. 재학생 충원율
3. 중도탈락율

제7조 (교육편제조정 기준과 조치) ① 1, 2호의 평가에 대해 기준에 미달하거나 3호의 평가에 대해 초과하는 학과(전공)에는 각 1점의 페널티를 부과한다.

1. 매년 10월 1일 정원내 재학생 충원률 60%(단, 전과한 재학생은 기존 소속에 1명당 0.5명으로 중복인정하며 전과 횟수에 상관없이 최초 전과 전 소속 학과에 인정)
2. 매년 3월 1일 정원내 신입생 충원률 60%
3. 매년 4월 1일 기준 중도탈락율 10%(교육기본통계조사 기준)

② 제1항에 의해 부과된 페널티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, 누적 점수가 6점 이상일 경우 교육편제 조정 대상으로 선정한다.

③ 제2항에 의해 교육편제 조정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경우, 다음 각 호에 의한 평가를 수행하여 추가적인 교육편제 조정을 할 수 있다.

1. 최근 3년간의 신입생 충원률(40%), 재학생 충원률(50%), 중도탈락율(10%)을 최근 연도순 4:5:1의 가중치로 합산평가하여 제2항에서 선정된 학과(전공) 중 하위 50%를 교육편제 조정 대상으로 선정한다.

④ 제2항에 의해 누적 페널티가 6점 이상인 학과(전공)와 제3항 제1호에 의해 선정된 학과(전공)는 자체발전계획을 작성하고, 해당 계획을 심사하여 모집중지, 통합, 정원감축 등의 교육편제 조정을 실시한다.

⑤ 단, 학부에 소속된 전공을 교육편제조정을 위한 평가를 할 경우 1학년에 관련한 평가지표는 다음을 적용하며, 그 외의 평가는 동 규정 제7호 ①에서 ④항까지의 내용을 따른다. (개정 2023.01.06.)

1. 신입생 충원율 : 학부소속 전공에 동일한 신입생 충원율을 적용한다.
2. 재학생 충원율 : 학부소속 전공에 정원을 학부 전체 입학정원의 1/n을 적용하고 학부 대상 당해 신입학생의 총 인원을 1/n하여 각 전공별로 1학년 재학생 수로 적용한다.
3. 중도탈락율 : 학부소속 전공에 1학년 입학정원을 학부 전체 입학정원의 1/n으로 하고 학부 1학년 총 중도탈락인원의 1/n을 전공을 적용한다.

제8조 (교육편제 조정의 예외) ① 제7조에 의한 교육편제 조정 외에도 필요한 경우 교육편제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특정 학과(전공)에 교육편제 조정을 할 수 있다.

② 제8조에 따라 교육편제 조정에 해당하는 학과(전공)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편제 조정을 유예할 수 있다.

1. 신설로 인한 교육편제 조정 4년 미만인 학과(전공)
2. 통합으로 인한 교육편제 조정 4년 미만인 학과(전공)
3. 학과(전공) 간 통합, 정원조정 등의 자체발전계획을 제출하여 교육편제조정위원회의 심의에서 대학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과(전공)

제9조 (교육편제 조정 절차) 교육편제 조정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. 다만, 신설에

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

1. 학과(전공)의 의견수렴과 제8조에 따른 교육편제 조정 기본계획 수립
2. 교육편제조정위원회 심의
3. 학칙의 개정
 - 가. 교무위원회 심의
 - 나. 대학평의원회 심의
 - 다. 법인 이사회 심의
4. 기타 필요한 절차

제10조 (특별 정원조정) ① 매 학년도 1학기 개시일자의 신입생 등록결과가 미진한 경우 제7조에 의한 교육편제조정 대상이 아니더라도 특별 정원조정을 할 수 있다.

② 그 외에도 교육편제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특별 정원조정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11조 (자율적 학과통합) 제8조의 모집중지 대상 학과(전공)가 아닌 2개 이상의 학과(전공)가 자율적으로 통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할 수 있다.

1. 통합 전 개별 학과(전공) 표준정원 합의 최대 50% 범위 안에서 정원 감축
2. 전공과목 개설학점 확대
3. 추후 교육편제조정 시 학과 의견 존중
4. 기타 필요한 사항

제12조 (모집중지된 교육편제의 학생) 모집중지된 학과(전공)에 재학 중인 학생은 학칙 및 관련 규정에 의해 타 학과(전공)로 전과할 수 있다.

제13조 (준용규정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규정을 따르며, 관련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(경과 조치) 이 규정의 시행으로 대구예술대학교 폐전공 기준 지침은 폐지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.